중국 외채관리제도, 순자산 방식 도입

('16. 9.)

상해사무소

1 기존의 외채 제도

□ 외국인투자기업은 국가외환관리국의 '외채등기관리방법 배포에 관한 통지'('13년) 등에 의거 투자허가증 상의 투자총액과 등록자본금의 차액(이하 '투주차'(投注差)) 범위 내에서 해외 차입이 가능

○ 차입한도는 단기외채는 잔액을, 중장기외채(차입기한이 1년을 초과하는 해외차입금)는 발생액을 기준으로 산정

[외국인투자기업 외채한도 계산 기존 방식]

해외차입 한도 = 투자총액 - 등록자본금 - (단기외채 잔액 + 중장기 외채 발생액*)

* 기존 중장기 외채의 기한연장, 신규중장기 외채 차입하여 기존 중장기 외채와 단기외채 상환시 해당기업의 외채원금잔액이 증액되지 않고, 인민페로의 환전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중복되어 외채한도를 공제하지 않음

□ 중국기업의 경우 외채차입은 기본적으로 외환관리국의 승인을 받아야 차입이 가능하여 실제적으로 외채차입이 엄격히 제한됨

[기존 외채관리 제도 요약]

	역외 외화 대출	역외 위안화 대출
관련기관	외환관리국	**중국인민은행**
기준	· **중국기업의 경우** - 12개월 초과 대출: 국가발전개혁위원회(NDRC) 개별 승인 필요 - 12개월 이하 대출 : 외환관리국 승인 쿼터 이하의 경우 가능 · **외국인 투자 기업의 경우** - 중장기 외채와 단기외채가 차입한도이내의 경우 승인 불필요 - **첫 자본금 납입 완료 필요**하며, **자본금납입은 정관에 제시된 일정을 충족**시켜야 함 - 단기외채는 잔액기준, 중장기 외채는 발생액 기준으로 한도소진	· **차주는 외국인투자기업**이어야 함 (부동산개발기업은 불가) · **중국기업은 불가**(단, 첸하이 및 상해자유무역지구 중국기업은 가능) · 차입금액은 차입한도 이내 · **등록자본금이 모두 납입**되었을 경우 **역외 위안화 차입 가능** · **대주는 모회사, 계열회사, 역외 금융기관이 가능** · **대출이율은 차주-대주간 자율 결정** · **발생액 기준으로 한도 소진**

등록	지역 외환관리국에 등록	지역 외환관리국 또는 인민은행 지점 등에 등록(지역에 따라 다름)
외채 사용	· 단기외채 : 운전자금 용도 · 사용 : 무역과 서비스 결제, 금융거래 등에 사용되어야 하며 증권투자, 전대, 모기지 등에는 사용 불가 · 차입금액의 위안화 환전 - 중국기업 : 외환관리국의 승인필요 - **외상투자기업 : 환전 가능. 역내 차입금 상환용으로는 사용 불가**	· 차입금은 외상투자기업의 승인된 사업목적에 의거 사용 가능 · **차입금은 역내외 대출의 상환용으로 사용 가능** · 차입금은 증권 및 파생상품 투자, 전대, 부동산투자 등에 사용 불가

2 외채제도 변경 내용

(1) 개요

□ 중국인민은행은 '16. 1월 부터 상해, 천진, 광동, 복건의 4개 자유무역 시험구내의 등록 기업 및 27개 금융기구들을 시범대상으로 외채관리 변경 제도를 시험운영 하였음

□ 중국인민은행은 '16. 4. 29일 '在全国范围内实施全口径跨境融资宏观审慎管理的通知(전국적 범위에서 전면적으로 외채관리를 신중히 하는 것에 대한 통지)'를 발표하여 '16. 5. 3일부터 해당 제도를 전국적으로 실시할 것을 통지

○ 상기 통지의 가장 큰 특징은 아래와 같음

① 인민은행과 외환관리국의 외채도입사전심사 제도 폐지 및 등록제 도입

② 외채한도 계산방식 변경(순자산(净资产) 방식)

③ 외채한도 잔액기준 관리

(2) 외채제도 변경추진 배경

□ 기존의 외채관리 제도는 위안화 외채는 발생액, 달러화 외채는 단기는 잔액, 장기는 발생액으로 관리하는 등 통화별, 기간별로 차이가 있었고, 외자기업은 등록제, 중국기업은 허가제로 운용하는 등 관리가 복잡

□ 중국의 위안화 SDR편입 및 국제화에 대한 자신감, 자본시장의 점진적 개방 요구, 중국기업들의 다양한 자금조달 필요성 및 차입선 다변화에 따른 경영효율 증대 등에 따라 외채관련 제도를 일부 완화해도 큰 문제가 없다는 판단하에 외채제도의 변경을 추진

(3) 세부내용

□ 대상, 한도, 한도산정 방식 등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음

구분		내용
대상		- 관련법에 의거 중국경내에 설립된 기업 및 금융기구 · 기업: 비금융기업(정부융자플랫폼 및 부동산개발기업 미포함) · 금융기구: 중국인민은행, 중국은행업관리감독위원회,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, 중국보험업관리감독위원회의 비준을 받아 설립된 법인형식의 금융기구
한도		외채위험가중치 잔액 ≤ 외채위험가중치 잔액 상한액
한도 관리		- 실제의 외채잔액, 대출기간·유형·대출통화 등의 요인을 결합하여 관리잔액을 계산 - 통화의 종류 및 대출기간, 발생액에 관계없이 잔액으로 관리. 상환후에 한도는 회복이 되어 한도를 반복적으로 이용이 가능 - 외국인투자기업, 외자금융기구는 현행의 외채관리방법(투주차방식) 또는 본 통지의 외채관리방법(순자산 방식)중 하나를 선택해야함. · 외채관리방법을 정해놓으면 원칙적으로는 다른 방법으로의 전환이 불가하며,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경우에만 전환이 가능. 전환시 중국인민은행, 국가외환관리국에 신청을 해야 함
기업의 경우	대출통화	위안화, 외화(달러화 등)
	자금용도	중국의 유관규정에 부합해야 함. 해당 기업의 생산 및 경영활동에 사용되어야 함. 국가 및 자유무역구의 산업정책방향과 부합해야 함
	신청	사전 신청이 불필요, 외채 대출 계약 후 3영업일 전에 자본계정정보시스템(구축진행중)을 통해 외채상황 관련내용 등록가능(국가외환관리국이 향후 관련 세칙을 발표 예정)

자료: 중국인민은행 자료 등 정리

□ 잔액계산방식

○ 잔액 및 잔액상한액 계산은 향후 인민은행에서 별도 계산시스템을 제공할 예정(인민은행 상해본부 경외과 확인)

외채위험가중치 잔액[1]		외채위험가중치 잔액상한액
∑외채차입금(위안화/외화)×①기간환산인수×②대출종류별 환산 인수 +∑외채차입금(외화)×③환율환산인수[2]	≤	①최근 1년이내의 자본 또는 순자산 × ②외채레버리지비율 ×③거시조정변수[3]

(4) 영 향

□ 중국기업: 과거 중국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외채 차입이 가능하였으나, 규정개정에 따라 외채차입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뀌면서 외채 차입이 용이

□ 외국인 투자기업: 외국인투자기업은 외채한도를 ① 기존의 '투주차' 방식과 ② 순자산 방식중 하나를 선택이 가능. 이론적으로 '투주차' 방식에서 외채한도를 소진한 기업도 순자산계산 방식에 따라 한도의 여유가 있을 경우 외채 차입이 가능

○ 과도기 동안 '투주차'방식을 유지하는 것은 급격한 변화에 따른 혼란 방지, 투자총액 제도가 외국인 투자의 근간으로서 유지가 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

---

1) ○ 잔액계산시 산입항목: 외화무역융자금액의 20%(기간환산인수는 1로 통일), 부외융자(우발채무), 기타 각종 경외융자자금 등
○ 잔액계산시 불산입 항목: 위안화 요구불예금, 위안화 무역융자, 동일금융기구의 경내외 입출금자금, 그룹내 Cash Pooling 입출금 자금, 자사사용 팬더채권 자금(경외 모회사가 발행하여 대출의 형식으로 경내 자회사에게 대여한 경우), 채무의 양도 및 감면금액 등

2) 아래 인수들은 거시경제 및 금융시장 상황에 따라 중국인민은행이 조절

	구분	계수
①	단기(상환기간 1년 이내)	1.5
	중장기(상환기간 1년 초과)	1.0
②	일반거래	1.0
	부외거래(우발채무)	1.0
③		0.5

3) 아래 인수들은 거시경제 및 금융시장 상황에 따라 중국인민은행이 조절

구 분	①	②	③
기 업	순자산	1.0	1.0
비은행금융기구	실제자본 또는 출자금 + 자본잉여금	1.0	1.0
은 행	1급자본	0.8	1.0

○ 기업이 한가지 방식을 선택했을 경우 다른 방식으로의 변경은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을 경우 불가

□ 본 통지는 '16. 5. 3일부터 시행하며, 시행일 이후에는 1년여간의 관찰기를 거쳐 통일적으로 본 통지에 따라 관리를 할 예정임. 자세한 실시세칙들은 향후 국가외환관리국에서 공표할 것으로 예상

[외국인투자기업과 중국기업에의 영향 정리]

	외국인투자기업	중국기업	비고
한도 계산방식	'투주차' 또는 순자산 방식 중 택1	순자산 방식	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1년여간 양 방식을 혼용(1년후의 방침은 정해지지 않음)
차입통화	위안화, 외화	위안화, 외화	
허가방식	신고제	신고제	중국기업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
한도관리	○ '투주차 방식' 선택시 - 외화: 잔액기준(단기), 발생액 기준(중장기) - 위안화: 발생액 ○ 순자산 방식 선택시: 잔액기준	잔액기준	'투주차 방식' 선택시 기존과 동일

4 향후 전망

□ 본 통지는 1년여의 과도기를('16. 5. 3 ~ 17. 5. 2) 설정해 놓아서 1년여간 제도의 시행을 관찰 후 부작용 등을 검토후 보다 제도를 완비할 것으로 예상됨

○ 현재 순자산 방식에 따른 계산 시스템, 신규 외채 등록시스템 등이 준비중에 있으며 1년여 동안 해당 시스템 등을 완비 예정

□ 현재 외국인투자기업에 적용하는 투주차 방식의 외채관리는 과도기적 제도로서 향후 외국인투자 기업에 적용되던 투주차 방식의 외채한도 관리방식이 폐지되고 순자산 방식의 외채한도 관리방식으로 통합될 가능성이 높음

5 당행 시사점

□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기존 투주차 방식 외에 순자산 방식의 외채 한도 산정이 가능해 졌기 때문에 외채한도가 소진된 기업의 경우 순자산 방식을 도입했을 때의 외채한도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

○ 그러나, 순자산 방식이 전면적으로 사용될 경우 경영상태가 좋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외채한도가 투주차 방식에 비해 훨씬 줄어들 가능성도 있음

□ 중국기업의 경우 외채도입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외채 차입이 용이해졌으며, 중국 본토기업들의 당행으로부터의 직접 대출 등도 가능해 질 것으로 예상 되어 수혜가 예상

□ 본 통지가 시행된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까지 외국인투자기업 중 순자산 방식으로 외채한도를 산정하는 기업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실무적으로 가능할지에 대해서도 불확실. 또한, 세부 규정들이 나와 있지 않아 제도가 안정화 되기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됨

□ 당행 차원에서도 여신상담시 제도 변경사실을 안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며, 외채제도 변경은 당행의 대중국 여신 및 고객기업에게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상해사무소에서도 향후 변경사항을 면밀히 확인할 예정임

[자료: 중국인민은행 웹사이트, 인민은행 상해본부 문의 등]

첨부 : 在全国范围内实施全口径跨境融资宏观审慎管理的通知(전국적 범위에서 전면적으로 외채관리를 신중히 하는 것에 대한 통지) 중문본